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濟州特別自治道 觀光分野 租稅制度
改善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專攻

李 泰 徹

2016年 8月

濟州特別自治道 觀光分野 租稅制度 改善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徐 鏞 健

李 泰 徹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심사를 위해 提出함

2016年 8月

李泰徹의 觀光學 觀光經營專攻 碩士學位
論文심사를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員

員
員

趙 文 秀
徐 鏞 健
洪 聖 秋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6年 8月

A Study on Improvement for Tax Institution of Tourism in Jeju Province

LEE TAI CHUL
(Supervised by Professor SUH YONG K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Science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CHO, Moon Soo
Yong Kun Suh
Hong, Sung-Hwa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II. 조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5
1. 조세의 기본원칙	5
1) 조세의 개념	5
2) 조세의 본질	6
3) 조세의 목적	6
4) 조세의 기본원칙	7
5) 조세법의 기본원칙	7
2. 조세정책 동향	8
1) 국세	8
2) 지방세	12
3. 한국의 조세제도	15
1) 조세지원 형식적 유형	15
2) 한국의 조세체계	16
3) 관광산업 조세제도	18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조세제도	35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현황	35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 제도	36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42

Ⅲ. 연구방법 및 조사 설계	43
1. 연구의 설계	43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구성	43
Ⅳ. 분석결과	46
1. 문항별 분석	46
2. 분석결과 요약	74
Ⅴ. 결론	76
1. 연구의 요약	79
2. 연구의 시사점	78
3. 선행연구와 차이점	83
4. 연구의 한계	84
참고문헌	85
설문지	87

표 목 차

<표 1> 조세의 개념	5
<표 2> 법인세율의 변화추이	9
<표 3> 지방세법 개편 비교	14
<표 4> 우리나라 조세체계	16
<표 5> 관광산업 관련 법인세 조항	18
<표 6> 관광산업 관련 소득세 조항	21
<표 7> 관광산업 관련 부가가치세 조항	23
<표 8> 관광산업 관련 종합부동산세 조항	25
<표 9> 관광산업 관련 관세 조항	27
<표 10> 관광산업 관련 개별소비세 조항	28
<표 11> 관광산업 관련 취득세 조항	30
<표 12> 관광산업 관련 등록면허세 조항	31
<표 13> 관광산업 관련 재산세 조항	32
<표 14> 관광산업 관련 지방소득세 조항	33
<표 15> 연도별 관광객 현황	35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특례 조항	36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관련 특례 조항	37
<표 18>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관련 특례 조항	37
<표 19>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관련 특례 조항	38
<표 20>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관세 관련 특례 조항	38
<표 21> 제주도특별법 중 법인세·소득세·관세·재산세 등 특례 조항	38
<표 22> 제주도특별법 중 부가가치세 등 특례 조항	39
<표 23> 제주도특별법 중 개별소비세 특례 조항	39
<표 24> 제주도특별법 중 관세 특례 조항	39
<표 25> 제주도특별법 중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특례 조항	40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취득세 특례 조항	40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관광시설 사업용 취득세 특례 조항	41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항	41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항	41
<표 30>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조사 설문내용 요약	44
<표 3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설문 의견 요약	47
<표 3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문 의견 요약	48
<표 33>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 손비인정 설문 의견 요약	50
<표 3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 설문 의견 요약	51
<표 3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	52
<표 3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소기업 규정 설문 의견 요약	53
<표 37> 근로자 휴가지원 경비 비과세 소득 분류 설문 의견 요약	54
<표 38>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설문 의견 요약	55
<표 39>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설문 의견 요약	56
<표 40>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특례 설문 의견 요약	58
<표 41> 유원시설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전환 설문지 의견 요약	60
<표 42> 부가가치세법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61
<표 43> 관광업 음식용역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설문 의견 요약	61
<표 44> 카지노 개별소비세 통합 부과방식 개선 설문 의견 요약	63
<표 45> 골프장 입장료 전액 감면 확대 설문 의견 요약	65
<표 46>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65
<표 47>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설문지 의견 요약	66
<표 48> 유원시설 장비수입 관세 경감 설문 의견 요약	67
<표 49>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설문 의견 요약	69
<표 50> 숙박요금 관광진흥기금 부과 설문 의견 요약	71
<표 51> 제주도 해외출국 관광객 관광진흥기금 부과 설문지 의견 요약	72
<표 52> 제주도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설문 의견 요약	73
<표 53> 제주도 관광산업 조세제도 개선 건의사항 내용	74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관광산업은 전 세계가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우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¹⁾ 왜냐하면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수요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로는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투자유발효과, 조세효과 등이 있다.²⁾ 다시 말해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적 서비스산업으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발전의 촉진과 더불어 외화획득의 창출이 가능하며 한 국가의 정책적인 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현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기조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혁신으로 전환하면서 관광산업의 창조적 역량과 복합적 관광콘텐츠 구축 및 지역주도형 관광개발 등이 모색되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케 하려면 각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발전 지향적 정책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관심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자율적인 투자역량이 배양되고 자주재정권이 강화되어 관광부문을 비롯한 해당 지역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다. 이러한 재투자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관광과 지방재정간의 상승적 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³⁾

조세문제의 핵심은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원부담을 그 구성원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정계층이 불합리하게 무거운 부담을 진다면 그에 대한 불만은 점차 확대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의 불안요

1) 이흥근(2000), 관광호텔의 조세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 최기중(2014), 관광학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p332

3) 윤석진(2006), 관광의 지방재정 확충효과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

1990년대 중반 관광산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된 이후 지속적으로 세제 감면이 검토되고 개정되어 왔으나 아직도 세법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정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지정되면 세제상의 모든 감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율에서 중과세 적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며 2013년을 기준으로 1개 기업 당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면 호텔업 878.3백만원,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51.9백만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12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 기업 당 법인세비용은 전산업 65.7백만원, 대기업 399.7백만원, 중소기업 17.4백만원 등으로 관광사업 업종의 법인세 비용 비중이 높다는 것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

또한 김희수(2014)의 관광사업자 조세부담현황 연구결과 세금과공과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과 호텔업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은 관광분야 해당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현황이라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보나 구축된 관광인프라로 보나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그 이전 2013년도에 비하면 12%가 증가한 2,624천명의 외국인이 제주도를 관광 목적지로 선택하였다. 이에 최근 5년 동안 제주도 관광객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며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관광 수입도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⁷⁾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주력 산업으로써 모두가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 관광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형평성에 맞는 조세제도가 절실히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관광관련 조세부분이 흩어져 있어 한 번에 살펴보기가 용이하지 않고 내용 또한 광범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감면 및 면세제도, 소득공제제도,

4) 원윤희(2014), 역사속의 세금이야기, 서울 : 박영사

5) 김희수(2014), 관광부문 조세제도 분석, 기본과제 2014-49

6) 한국은행 편집부(2014), 2013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7) 오준석(2012),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조세학술 논문집, 제28집 제1호.

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서는 외국인 숙박에 대한 영세율 지원, 관광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관광진흥기금 징수 등 현행의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해석이 절실하다.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인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소비산업이나 향락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산업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민간차원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여가문화를 지금보다 더 다각화시키고 문화산업의 기반으로써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⁸⁾

이에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자료 들이 있지만 관광업에 대한 조세제도 관련 연구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 3-4년 동안 국내외 관광환경은 큰 변화를 하고 있는데 반해 조세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도부터 특별자치도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관광3법 등을 이양 받았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위임이 되지 않고 있어 완전하지 못한 부분 자치권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실질적인 제주도의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8) 오준석(2012),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조세학술 논문집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관광분야의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주도 관광분야의 현행 조세제도를 파악하고 조세지원에 관한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광관련 조세법 중 내국세, 관세, 지방세, 관광진흥기금 등의 각 분야에서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에 관례적으로 적용되었던 조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세제도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된 문헌 연구를 살펴보고 이론적인 사전 검토를 하였고 이후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통합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관광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제주관광협회 업계종사자, 제주도청 공무원, 제주관광공사 간부, 제주대학교 경상대 교수 및 제주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의 절차로는 첫째, 연구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및 관광레저 분야 조세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둘째, 전문가 구성원들의 조세제도 신설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고 셋째, 마지막으로 기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의견수렴 방법은 좌담회 형태의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과 그 외 개별적인 설문 및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4월 15일 전문가 회의 시 설문지를 전달하고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설문내용에 대한 배경설명 등을 하였다. 2주 후 2016년 4월 29일 전문가 모두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각각의 근무처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 면담을 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현장에서 기록한 후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후 개별 면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명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메일을 활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Ⅱ. 조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조세의 기본원칙

1) 조세의 개념

조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것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한다. 조세는 국가의 절대적·경제적 권력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권리, 즉 과세권으로서 국가존립의 절대적 전제이며 또는 정치적 집단의 형성에 수반하는 필연적 귀결이다.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러하듯이 과세권의 행사에는 강제성이 수반되어 납세의무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조세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조세의 개념

구분	내용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주체가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과세대상·근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개별적인무보상성	조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 납부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닌 것이다.
금전급부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서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출처: 강경태(2011), 「세법개론」, 서울: 지혜의 샘, p5.

9) 서희열(2005), 「세무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학사, p19.

조세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상의 단체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상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로서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니다.¹⁰⁾

2) 조세의 본질

조세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조세의 정책적인 측면은 조세를 경제학적 내지 재정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이론적 구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하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입장이다. 둘째, 조세의 법률적인 측면은 조세를 법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조세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법률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조세의 회계적 측면은 조세를 회계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분석하여 과세의 근거와 세무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3) 조세의 목적

조세는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되었으며 경기조절,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 정책목적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목적도 중요시 되고 있다.¹¹⁾

조세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서비스 자금의 조달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여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조세는 그러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개인의 손에서 국가의 손으로 이전되는 부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의 조달이 필요하다. ¹²⁾

오늘날 국가는 조세를 단순한 국고 수입의 조달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 경제정

10) 서영진(1996), 「조세개론」 서울 : 법문사, p5.

11) 노현섭(2009), 「조세 총칙법 강의」 대구 : 도서출판 대명, p30.

12) 임승순(2011), 「조세법」 서울 : 박영사, p5.

책·사회정책·인구정책 등 국가 중요정책 조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조성, 즉 작용목적에 의하여 더욱 많이 이용한다.¹³⁾ 최근에는 사회보장 등의 목적이 강화되는 등 조세의 정책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써 사회보장의 충실, 주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근로자 복지의 향상, 소비자 보호의 추진을 위하여 조세의 수입과 작용에 목적을 두고 조세제도를 활용하게 된다.¹⁴⁾

4) 조세의 기본원칙

아담 스미스 (A. Smith)는 국부론에서 조세의 원칙을 공평의 원칙, 명확의 원칙, 편의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와그너(Wagner)는 1890년 조세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조세원칙으로 재정정책상의 원칙, 국민경제상의 원칙, 공정의 원칙,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현대에는 스미스의 4가지 원칙에 경제적 원칙을 더하여 조세의 5원칙으로 부르고 있다.¹⁵⁾

5)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요조달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그 주요 목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추구한다.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¹⁶⁾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와 조세법의 엄격 해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¹⁷⁾ 조세평등주의란 국민들 사이에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상의 조세공평과 국민의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을 말한다. 다만 세법의 해석·

13) 서희열(2005), 「세무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학사, p20-21.

14) 노현섭(2009), 「조세 총칙법 강의」 대구 : 도서출판 대명, p31.

15) 전개서, p32.

16) 김두형(2011), 「로스쿨2011조세법 기초이론」 경기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p95.

17) 전개서, p63.

적용 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상위의 원칙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¹⁸⁾

조세법률주의가 과세의 요건과 내용을 창출하여 과세권의 실정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그 한계를 설정하는 형식적 원리로서 적용된다. 그러나 평등주의는 그 내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원리로서 적용한다. 즉 과세요건의 설정은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적용되고 또한 그 법률의 내용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세부담을 분담시켜야 한다.¹⁹⁾

2. 조세정책 동향

1) 국 세

(1) 주요 특징

첫째, 부가가치세의 도입이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²⁰⁾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세 세목이며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세제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²¹⁾

한국의 조세 세목으로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 14개다.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 11개의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치면 세금의 종류는 25개에 달한다.

18) 강경태(2011), 「세법개론」 서울 : 지혜의 샘, p11.

19) 유은중(2011), 「세법학 I」 서울 : 도서출판 탐진, p35.

20) 한장석·김용관(2012), 부가가치세 2012, 서울 : 광고 이텍스, p47.

21)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4-49, p17

2013년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소비세의 25개 세목(국세+지방세)을 1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²²⁾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소비세 체계가 10여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다소 복잡하여 현재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통합하여 소비세 체계를 단순화하였다.²³⁾ 세목체계의 간소화로 방위세의 폐지, 부당이득세의 폐지, 자산재평가세의 폐지, 전화세의 폐지(부가가치세에 통합)등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소비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는 과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면세대상 품목의 확대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인하이다. 법인세제와 관련된 세제개편이 거의 매년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제 체계의 개정 및 지속적인 세율 인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율 3단계의 누진 구조를 1981년부터 2단계로 완화했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금액의 상향 조정 및 세율 인하가 추진되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이에 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하며 원가를 낮추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⁴⁾ 법인세율의 변화 추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법인세율의 변화추이

구분	과세 표준	2002	2005	2008	2009	2010	과세 표준	2012 이후
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	1억 이하	15%	13%	11%	11%	10%	2억 이하	10%
	1억 초과	27%	25%	25%	22%	22%	2억 이상	20%
	-	-	-	-	-	-	200억 이상	22%

※ 연구자 세법 참조 재구성

셋째,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이다. 시장경제 전환기(1980~90년대)의 세제개편은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변화를 반영하

22) 조세일보 www.joseilbo.com/news/htmls/2013/03/20130318175180.html

23) 나성린(2005),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p23

24)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4-49

였다. 1993년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여 따른 세수 부족을 보완하고 소득과세에서의 형평을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1994년 말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의 개정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다. 당시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 등 다양한 세제상의 합리화를 진행하였다.²⁵⁾

셋째, 부동산 세제의 조정이다. 종합토지세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되었으나 200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되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국세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지방세에서는 종합토지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에 최종 폐지되었고, 종합토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통합되기 전까지 지방세로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됨으로써 보유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이원화를 도모하였고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별도로 과세하던 것을 합치고 과세표준으로 실제거래가격을 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있었다.²⁶⁾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기능 및 자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다.²⁷⁾

(2) 최근 주요 개편내용

첫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제를 개편하였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고자 하였다.²⁸⁾

둘째,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를 통한 정부재정을 확보하였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감면으로 많은 혜택을 주던 조세부분에서의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을 축소하고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 양

25)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4-49

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서울 : 휴먼컬처아리랑, 2016

27) 연합뉴스,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0/26/>

28) 윤현석(2014),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방안, 지방재정세제 유관학회 공동세미나 자료, p169

성화를 통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과세대상 확대 등 많은 소득세 분야에서 과세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억제하고 대신 지방정부에 국고 지원금을 늘려나갈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탈루소득 색출 강화와 탈세감시제도를 개선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증액하였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많은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미 이행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조세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세수증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물론, 근래 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복지증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세수증대 정책을 추진하였고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증세를 비롯하여 비과세 제도 축소개편과 조세지원 감축 등이 필요하지만, 경기부양의 측면에서는 감세와 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조세지원 증가가 요구되는 정책 딜레마(policy dilemma) 상황에 놓여졌다. 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세제정비, 중산층 · 서민생활 안정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목표를 감안하여 세금의 증세와 감면, 비과세 정비 등 여러 요인들을 같이 고려하는 정책배합(policy mix) 사용과 전면적인 증세를 피하는 대신 비과세 제도를 축소 개편하고 근로소득증대를 위한 세제, 배당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및 근로소득 환류세제와 같은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최근 정부의 담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인상이 추진되었다.²⁹⁾

29) 전개서, p21

2) 지방세

(1) 주요 특징

첫째, 지방정부의 과세 자율성 확대와 제한이다. 최근 지방세 정책은 지방자치의 이념과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오랜 기간 지방의 재원조달 방식이 교부세나 보조금 등과 같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지방세 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규정되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에서 지방의 여건에 따라 감면조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과세 자율성 확대는 조세경쟁으로 이어져 과세 자율성의 허용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과세 자율성은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세에 해당하고, 해당 구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울시의 자치구는 재산세 세수격차로 인해 재정력에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 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³⁰⁾

둘째,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정부 세원의 지방 이양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원 및 재원조정에 따라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주행세가 지방세로 도입되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되어 이의 보전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다. 또한 2005년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면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국세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 실시 등 지방분권을 위한 세원조정은 2010년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책임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치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관련 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이 상

30)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4-49, p22

당히 확대되고 있다.

지방세수 증가에 비하여 재정지출이 급증하다 보니 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책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수 기반구축 증대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을 하여야 한다.³¹⁾

(2) 최근 주요 개편내용

첫째, 2005년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된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되었다. 지방소비세 도입 시 계획으로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고,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1%로 인상되었으나, 인상된 6%p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14년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원보전의 일환으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였다.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종전 주민세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세목으로 구성되어 종전에 주민세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였다.³²⁾

셋째, 2011년 지방세 3법 시행 및 세목이 통폐합되었다. 종전 지방세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1개로만 운영하여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법령 개정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분법화가 되었다. 지방세법 개편 비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³³⁾

31) 이영희 주만수, 최병호, 홍서민(201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권 26호

32) 전개서, p25

33) 전개서, p27

<표 3> 지방세법 개편 비교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재산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취득관련)	취득세
등록세(취득무관), 면허세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주행세	자동차세
도축세	폐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좌동

출처: 김희수(2010),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p27.

3. 한국의 조세제도

‘조세(租稅)’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적급부”라고 정의된다.³⁴⁾ 이러한 조세는 1차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경제 정책적·사회 정책적 목적 등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2차적 목적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2차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정책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지원과 특정목적에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조세지원제도’라 함은 위의 조세특례제도 중 국가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금을 경감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원대상별로 창업지원, 중소기업지원, 투자촉진지원, 연구 개별지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지원 등을 목적으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과 같은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1) 조세지원 형식적 유형

(1) 비과세

정책적인 목적 등을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말하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하나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게 되어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34) 최명근, 「稅法學總論(增補6版)」, 세경사, 1992. pp.27-28

(2) 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상 과세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3) 세액감면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거나(세액면제) 또는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세액경감)을 말한다.

(4)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³⁵⁾

2) 한국의 조세체계

한국의 조세체계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지 지방정부에 있는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다.

국세는 과세물건이 국경을 통과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고, 내국세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며, 한국 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별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또한 관세는 국세 중 외국으로부터 국경을 통과하여 우리나라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현행 우리나라 국세의 체계는 다음 <표4>와 같다.³⁶⁾

<표 4> 한국의 조세체계

구 분				세 목	근거법률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국세	독립세	내국세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상속세및증여세법

35) 최명근(1992), 「稅法學總論(增補6版)」, 세경사, pp.27-28.

36) 강경태(2011), 「세법개론」 서울 : 지혜의 샘, pp7-8.

		증 여 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간접세	개별소비세	주 세	주 세 법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통세	인 지 세	인 지 세 법
		증권거래세	증거거래세법
관세		관 세	관 세 법
부가세		교 육 세	교 육 세 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	보 통 세	취 득 세	지 방 세 법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목 적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레 지 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출처 : 강경태, 「세법개론」 (서울 : 지혜의 샘, 2011), 7-8.

3) 관광산업 조세제도

현행 관광산업과 관련된 조세제도로는 국세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구분된다. 각 분야별 조세제도의 주요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산업 관련 법인세 조항은 <표5>와 같다.

(1) 관광산업 관련 법인세³⁷⁾

<표 5> 관광산업 관련 법인세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 2014.1.1., 2014.12.23.,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7) 관광분야에서 적용되는 세목 조항들을 두루 살펴보면서도 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조항들에 초점을 두고 제조업 등과의 비교 관점에서 발췌하였으며 법인세, 소득세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항목은 법인세에서 언급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5.12.15.>

1. 감면 업종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2014.2.21, 2016.2.5., 2016.5.10>

3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3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항을 보면 법제6조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개정 2014.1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항에는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6.2.5>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2014.2.21, 2015.2.3, 2016.2.5>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2) 관광산업 관련 소득세

<표 6> 관광산업 관련 소득세 조항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p>① 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p>
동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p>① 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p> <p>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p> <p>양도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p>

동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 ① 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2.18, 2015.2.3>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등
-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동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5.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1, 2014.12.23., 2015.12.15.>

동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6.2.5>

(3) 관광산업 관련 부가가치세

<표 7> 관광산업 관련 부가가치세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삭제 <2015.2.3.>

부가가치세법 제65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동법 시행령 제113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 부칙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05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부칙을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 부칙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4) 관광산업 관련 종합부동산세

<표 8> 관광산업 관련 종합부동산세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라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자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① 법 제106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① 법 제106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5) 관광산업 관련 관세

<표 9> 관광산업 관련 관세 조항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동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동법 제199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 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4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 등을 환급 또는 송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법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6) 관광산업 관련 개별소비세

<표 10> 관광산업 관련 개별소비세 조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飲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라고 되어 있다.
-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주(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6.22>
- ② 관광중심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2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7) 관광산업 관련 취득세³⁸⁾

<표 11> 관광산업 관련 취득세 조항

지방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3호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9.11, 2015.2.3.>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8)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조항은 취득세에서 언급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7.24, 2015.12.15>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8) 관광산업 관련 등록면허세

<표 12> 관광산업 관련 등록면허세 조항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5.12.29.>

동법 시행령 제44조 【대도시 법인 증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관광산업 관련 재산세

<표 13> 관광산업 관련 재산세 조항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① 법 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 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관광산업 관련 지방소득세법

<표 14> 관광산업 관련 지방소득세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중략...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동법 시행령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100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조세제도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현황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구축된 관광인프라로 보나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발전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에는 비록 관광객이 582만명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와 유가 및 환율불안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0.19% 감소하였다. 하지만 경제불안정 요인이 해소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는 관광객 652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11.55%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 63만명에 이르렀다. 2010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한 75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았고 그중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10%를 넘어서 77만 여명의 외국인이 제주도를 관광지로 선택하였다.³⁹⁾

<표 15> 연도별 관광객 현황 (2010~2015)

(단위 : 천명, %)

연도	전체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율	관광객 수	비중	증가율	관광객 수	비중	증가율
2015	13,664	111.3	11,040	80.7	123.4	2,642	19.3	79.3
2014	12,273	113.1	8,945	78.9	105.0	3,328	27.1	142.5
2013	10,851	112.0	8,517	78.5	106.3	2,334	21.5	138.4
2012	9,691	110.9	8,010	82.7	104.0	1,681	17.3	160.9
2011	8,740	115.3	7,695	88.0	113.1	1,045	11.9	142.9
2010	7,578	-	6,801	-	-	777	-	-

출처: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제주관광월별통계(2016) 참조, 연구자 재구성

39)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제주관광월별 통계(2016)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관련된 조세특례 제도로는 국세의 조세특례 내용을 각 세목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으며, 지방세법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가 있다. 조세특례 관련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지방세, 관광개발기금 으로 구분되며 각 세목별 현행 조세제도의 주요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 분야 특례 조항은 <표 16>과 같다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특례 조항

<p>법인의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p> <p>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동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포함</p>
<p>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p> <p>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p>
<p>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 대상 관광업종 규정</p>
<p>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와 동법 시행령 제116조 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0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동법 제116조의25에서 관광사업 전업종이 전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p>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에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 구입, 관광공연의 입장권만을 세금감면 대상 접대비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중 소득세 분야 특례조항은 <표 17>과 같다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특례 조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 제조업 등 전반적인 업종이 포함되면서 관광사업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일부만 포함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4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특례 조항은 <표 18>과 같다

<표 18>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특례 조항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호텔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액 환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별소비세 분야 특례 조항은 <표 19>와 같다.

<표 19>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특례 조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외국인관광객 등이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환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중 관세 분야 특례 조항은 <표 20>과 같다.

<표 20>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제한법 관세 특례 조항

수입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는 관세를 면제

(2) 지방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도특별법) 중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분야 특례 조항은 <표 21>과 같다.

<표 21> 제주도특별법 중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특례 조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감면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 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특례 조항은 <표 22>와 같다.

<표 22> 제주도특별법 중 부가가치세 등 특례 조항

제주도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개별소비세 특례 분야는 <표23>과 같다.

<표 23> 제주도특별법 중 개별소비세 특례 조항

제주도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 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관세 특례 분야는 <표24>와 같다.

<표 24> 제주도특별법 중 관세 특례 조항

제주도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개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례 분야는 <표25>와 같다.

<표 25> 제주도특별법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특례 조항

제주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 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중 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특례 분야는 <표26>과 같다.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취득세 특례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중 관광시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 특례 분야는 <표27>과 같다.

<표 27> 관광시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 특례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중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분야는 <표28>와 같다.

<표 28>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p>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p> <p>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원양어업 선박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p> <p>여객운송사업에 전용 조건으로 취득·대여하는 선박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p> <p>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2. 외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 면제 <p>③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해양화물 또는 해양여객운송 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p> <p>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은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p>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중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취득세 면제 특례 분야는 <표29>과 같다.

<표 29>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취득세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p>① 「항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출발점 또는 도착점으로 국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다만, 항공기의 국내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0., 2015.12.31.></p> <p>②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제주관광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인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제주관광산업이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관광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차원에서 3가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관광을 모토로 국가 산업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숙박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우선 먼저 관광객 유치 정책을 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①의 일몰된 외국인 숙박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새로이 지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의 관광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조항이 유지되고 관광관련 업종 전반에 확대 되어야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관광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산업이 저변확대를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중 문화접대비 지출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액이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 이러한 세제지원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여 제주관광산업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육성 되어야 한다.⁴⁰⁾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산업, 향락산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산업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40) 오준석(2012).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한국국제조세협회, p17.

Ⅲ. 연구방법 및 조사 설계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지에 의한 실증조사 분석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성된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발전연구원』에 소속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소속 단체의 여러 관광관련 종사자들과 대화와 협의를 거쳐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눈 후 종합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합치하여 설문에 응답 하였다.

연구방법의 절차로는 첫 번째, 연구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및 관광레저 분야 조세제도의 현황에 대하여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두 번째, 전문가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의견수렴 방법은 좌담회 형태의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과 그 외 개별적인 설문 및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연구, 이성태(2012)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방안 연구, 윤주(2012)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6개 항목으로는 첫째로 법인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둘째로 소득세 분야 조세분야 개선, 셋째로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넷째로 개별소비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다섯째로 관세분야 조세제도 개선, 여섯째로 취·등록세와 재산세 및 관광진흥기금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

의사항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각 항목별 질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인세 분야 조세지도 개선 :내국세 5문항, 둘째로 소득세 분야 조세분야 개선 :내국세 3문항, 셋째로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 3문항, 넷째로 개별 소비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 3문항, 다섯째로 관세분야 조세제도 개선 : 1문항, 여섯째로 취·등록세와 재산세 및 관광진흥기금 : 3문항이며 긍정과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 설문지로 측정 설문은 폐쇄형 질문과 자유기초의 오픈형 형식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절대 필요함, 2점 약간 도움이 됨, 3점 보통, 4점 별로 도움 안 됨, 5점 절대 필요 없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또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 설문지에 의한 조사에서 측정할 수 없는 질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모든 응답이 끝난 후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내용의 확인과 보충뿐만 아니라 양적 자료와 각 집단 간 상호 교차하여 해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해석에 매우 유용하였다. 전문가 조사 설문지 내용을 요약하면 <표 30>과 같다.

<표 30>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조사 설문내용 요약

구 분	설 문 내 용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에 제외된 관광관련 업종의 추가가 필요하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항에 관광업종 추가가 필요하다.
	3.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를 기업의 손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광활동과 관련한 기업접대비 인정범위 한도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규정을 완화하여 관광관련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한다.
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6. 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 경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7. 농어촌주택을 관광휴향형 주거시설로 사용 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8.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9. 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숙박요금의 영세율적용 기한 연장 및 환급 시 사전환급제도로 전환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10. 관광업종 유원시설 시설물 이용 시 관광활동 관련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11. 관광업종 음식점역에 의제매입세액 적용 시 공제율을 상향 조정 하여야 한다.
	12. 카지노 입장요금과 영업실적의 개별소비세 두 번 과세를 통합하여 한번 과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 관련 (개별소비세법)	13. 현행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대한 3천원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4. 제주도내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징수율을 현행 매출액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5. 유원시설물 해외수입 시 관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지방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16. 현행 관광단지내 산업단지보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낮아 차별화
	17. 제주특별자치도 숙박요금에 대한 관광세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기금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8. 제주도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국제관광객 대상으로 징수하는 관광진기금을 현행보다 인상 조정 하여야 한다.
	19.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IV. 분석결과

1. 문항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6개 항목으로는 첫째, 법인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둘째, 소득세 분야 조세분야 개선, 셋째,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넷째, 개별소비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다섯째, 관세분야 조세제도 개선, 여섯째, 취·등록세와 재산세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외국자본의 유입 및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관련 업종 중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등 업종을 추가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배경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1960년대 당시에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으로 극히 일부만을 국내에 유입하였으며 유입된 자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실시하였다.

이후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80~90년대에 외국인 투자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지원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92~95년도에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과 수출업체 위주로 지원을 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 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2003년도 말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용사례가 매우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외국인 투자

지역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였다. 원래 목적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이었으나 그 후 관광과 물류분야 등이 추가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불 이상으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 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 감면세액은 사업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전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있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관광업종 추가 전문가 의견

우선 감면규정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효과가 일부분야(관광숙박업)에 치중되는 상황에서 숙박업의 과잉공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업종 추가 및 취약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 강화는 아주 필요하다며 절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31>과 같다.

<표 3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업계	별로 도움 안 됨	현재 외국인 투자는 과잉 투자되어 관광수입의 역외수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업종 확대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영난은 더 악화될 우려됨
공기업	별로 도움 안 됨	도내 업체 영세성으로 역차별 현상 발생됨
연구원	절대 필요함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효과가 일부분야(관광숙박업)에 치중되는 상황에서 숙박업의 과잉공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업종 추가 및 취약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강화는 아주 필요한 정책임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광업종을 추가 하여야 한다.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경

처음 도입했던 1968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공제율이 10%이었으나 2010년 세법개정 당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등재가 되었다. 그 후 2016년 2월5일 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1항37 공제대상 업종에 명시된 관광업종에서는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공연장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만이 열거되어 있어 관련업종인 관광유람선업과 자동차야영업, 관광공연장업의 확대 추가가 필요하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관광관련 다양한 업종으로의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이 해당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유람선업과 자동차야영업, 관광공연장업은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나 추가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일부 관광대상 업종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요약하면 <표32>과 같다.

<표 3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업계	절대 필요함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신규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하여야 함. 도내 영세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공기업	절대 필요함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함.
연구원	약간 도움이 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는 사업용 자산이 해당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의 경우는 이미 적용되는 상황이고 관광유람선업과 자동차야영업, 관광공연장업은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나 검토할 필요성은 있음.

3) 정부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설정한 1년에 봄, 가을 2회씩 실시하는 관광주간에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국내여행 휴가지원경비를 지원하는 기업의 손비로 추가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 손비인정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의 활성화와 내수 시장 확대,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 분산 등을 위해 매년 2회씩 봄, 가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5월과 9월중에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관광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이 기간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정부의 지원 아래 지자체와 관광업체가 협력해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있는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숙박·편의 시설, 입장료 등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마련된다.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 경비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법인의 경비관련】 조항에 의하여 기업체에서 인건비 즉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 손비 인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모두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는 보통 정도로 국내여행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한편은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제주지역에 국내관광객 유치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동시에 감안하는 문제가 있어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국내여행 활성화로 제주도 관광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표33>과 같다.

<표 33>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 손비인정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업계	보통	국내여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됨
공기업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연구원	약간 도움이 됨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내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 수용력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4) 관광활동관련 기업의 접대비 지출금액 인정범위를 입장권 구입비용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용을 추가 확대하여 관련된 제반 지출액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

(1) 관광활동 관련 기업접대비 인정 범위 추가 배경

세법상 기업의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지출대상이 사업과 연관된 자로서 지출의 목적이 접대행위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과의 서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결국 기업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면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입장권 구입만으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되며 관광지내의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가 전부 포함되도록 문화비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접대비 지출내용을 보면 식대와 술 접대에 관련된 지출액이 주된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선물구입지도 포함은 되어 있기도 하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부 문화접대비의 지출액은 현행 규정의 미흡으로 지출금액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념 일이나 연말연시에 따듯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업의 건전한 사회활동과 관련한 융복합 접대비의 지출은 국민 정서함양 및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의 기업접대비에 대한 인정범위를 입장권구입 비용에 한정하는 내용을 확대하

여 문화비 지출에 지원하거나 기타 이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제반비용 모두를 문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의 제3항 ⑤ 문화접대비 범위를 확대하도록 문화접대비는 전액 인정되도록 하는 접대비 한도액을 개정을 해야 한다.

(2) 관광활동 관련 기업 접대비 인정범위 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주관광협회는 문화접대비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하여 그 효과가 보통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관광공사는 절대 필요한 내용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법 개정을 위한 행정력 소비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34>와 같다.

<표 3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업계	보통	의견 없음
공기업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연구원	별로 도움 안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비의 범주를 고려할 때 대부분이 입장권의 형태로 제주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보다는 법 개정을 위한 행정력 소비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음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정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관광관련 기업들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중소기업 규정 배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세액공제 제도로 199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다. 당시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40% 세액공제 감면을 하였으나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감면비율이 기업의 규모나 업종 또는 입지에 따라서 차등화 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비율에 대한 내용은 <표35> 와 같다.

<표 3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

기업규모	업종	입지	감면율
소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	10%
	기타업종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중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비수도권	5%
	지식기반산업	수도권	10%
	기타업종	비수도권	15%

중소기업 판정기준 종업원 수가 제조업은 100명 미만, 운수업의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 경우는 10명 미만으로 소기업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관광사업에는 다소 불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관광사업과 관련된 소기업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며 관광 사업에 대하여서는 소기업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관광사업체들은 적용 대상이 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만일 적용이 되더라도 제조업 등에 비해 감면비율이 낮아서 혜택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므로 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사업체가 소기업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신규 사업체가 급증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부는 특별세액 감면 범위 확대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이유로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와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관광 사업이 이미 적용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많은 관광사업체는 투자진흥지구 및 여타 관련 지원을 통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도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에 대한 설문 내용의 결과는 <표36>와 같다.

<표 3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소기업 규정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업계	절대 필요함	제주 지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신규 산업체가 급증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음. 특별세액감면 범위확대는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공기업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연구원	별로 도움 안 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와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이 이미 적용을 받고 있고, 제주지역의 많은 관광사업체는 투자진흥지구 및 여타 관련 지원을 통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도입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6) 기업체 근로자의 휴가지원 경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로자 휴가지원 경비 비과세 소득 분류 배경

여행바우처 제도의 시행으로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광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국내 근로자들에게 연간 봄, 가을 2회의 관광주간을 설정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주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하며 관광을 통한 근로복지 향상과 국내의 관광수요 확대는 물론 다양한 지역단위 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휴가문화 개선, 휴가분산 유도 등을 통한 국내관광 경쟁력 확보에 대한 1석3조의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국내여행경비의 30%~50%를 지원하여 월 소득 170만 원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여행경비의 30%, 1가족 당 15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소득세법 12조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주로 정부와 관련이 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위로의 성격을 가진 지급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근로자가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국내관광 여행경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 중에는 제주지역의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내국인 관광객의 수용능력 초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국외여행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필요성에 대한 중립적 평가도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국내여행휴가 지원경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37>과 같다.

<표 37> 근로자 휴가지원 경비 비과세 소득 분류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절대 필요함	항공료를 포함하여 지원경비를 비과세 소득경비에 삼입시킬 필요가 있음
업계	절대 필요함	정부에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주관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시행을 하고 있음 휴가지원경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국내 여행 지원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공기업	절대 필요함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기에 국내 여행 휴가지원은 절대 필요함
연구원	보통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내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 수용력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앞의 3번과 유사), 또한 제주가 아닌 국외여행을 촉진하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7) 농어촌 주택의 관광휴양형 주거시설로 사용 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경

정부의 관광서비스업 활성화로 농어촌 관광지 숙박시설 선택 시 관광객들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숙박시설 선호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민박 숙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 농어촌 주택을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 시 농어가 소득 증대와 한국 저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농어촌 주택을 관광시설로 활용하여 별장처럼 기능을 하는 경우 관광휴양형 주

거시적으로 분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을 개정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 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사실상 1가구 1주택은 아니지만 금액이 낮거나 저렴한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다면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다면 농어촌 관광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

(2)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부동산에 대한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염려하며 기존의 숙박업 영세사업자들이 경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역기능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전문가들 모두는 제주도내의 숙박시설 급증으로 과잉공급에 따른 우려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38>과 같다.

<표 38>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보통	부동산 과잉 투자로 부유층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영세 사업자들이 경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역기능이 존재함
업계	별로 도움 안 됨	현재 제주도는 관광 숙박시설 과잉공급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정부에서 공유 민박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과잉공급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공기업	별로 도움 안 됨	의견 없음
연구원	별로 도움 안 됨	현재 제주도는 숙박시설의 급증으로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제주도도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는 상황)에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우려되는 현실, 특히 제주도는 실정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연립, 빌라 등)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민박 및 펜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8)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우수한 국제관광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배경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 후 3년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하여 취업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해당되는 중소기업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 또는 60세 이상 및 장애인들이 주로 적용 대상으로 대상 업종 확대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관광업종에 대한 추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27조에 중소기업 범위의 관광사업도 추가포함 하여 국제의료관광업 같은 관광업종 종사자인 외국인 기술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제의료관광과 같은 관광관련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 된다면 약간의 도움은 될 것 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와는 달리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연관이 되어 도민사회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 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39>과 같다.

<표 39>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약간 도움이 됨	고도의 기술 인정 대상 부분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지, 도입될 경우 도움이 될 것임
업계	약간 도움이 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외에 관광관련업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공기업	별로 도움 안 됨	영리병원 추진 등의 상황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연구원	약간 도움이 됨	영리병원의 도입과 연관되는 문제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도민사회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 단순하게 도입되어질 제도가 아님

9) 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 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현행 사후환급제도를 사전환급제도로 전환하여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야 한다.

(1)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특례 배경

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숙박 객실수입에 대하여 숙박 및 기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폐지 및 한시 적용을 반복해 오다가 2014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여 시행 되었다. 2016년 현재의 외국인 숙박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관광을 할 때 꼭 필요한 숙박용역에 대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활성화 방안으로 2015년 3월 31일로 일몰된 숙박용역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2015년 3월 31일까지 숙박용역에 대하여 실시하던 사후환급 제도를 기한연장 이후에는 사전환급제도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절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의 해외유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재화와는 달리 서비스는 그럴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후환급 제도를 사전환급제도로 전환을 하여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후에 환급을 해주는 제도는 상품을 구입한 구매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면제가 없어 세수의 손실을 줄일 수는 있지만 숙박용역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격인하의 효과를 줄 수는 없으므로 관광객의 재방문 기대치가 줄어들 수가 있다. 외국인의 숙박용역은 외국과의 거래로 볼 수 있어 국제적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시적 제도운영 보다 상시 적용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외국의 사례로 현재 캐나다에서는 소비세를 사후 환급해주는 사례가 있으나 단기체류 관광객에게만 환불하고 이외의 외국인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세율 적용은 단순히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할 때만이 적

용하지 말고 관광업과 같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도 수출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수출과 동일한 영세율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2)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특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에 대한 의견으로 사후환급제도가 다소 번거롭긴 하나 사전환급제도로 전가될 경우 관광호텔 숙박객인 소비자에게 세액이 전가되어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3년 시한 연장은 특정 국가나 지자체별 관광프로모션 시행에 한시적인 적용의 형태 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행의 필요성은 보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를 시행할 경우 객실 가격인하 효과를 통해 외국관광객 증가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최근 미용 및 성형관련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된 상황이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40>과 같다.

<표 40>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특례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보통	번거로운 점은 있으나 사전 환급될 경우 호텔 숙박객에게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업계	절대 필요함	숙박 과잉 공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에 객실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외래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공기업	보통	3년 연장과 같은 형태가 아닌 한국 방문의 해, 제주 방문의 해 등 특정한 국가나 지자체별 관광프로모션 시행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형태, 지자체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 별도 시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연구원	약간 도움이 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의료관광(미용 및 성형 관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도입되어진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으로 다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10) 관광업종 유원시설의 시설이용 요금 및 입장료에 대하여는 관광활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1) 유원시설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전환 배경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에 대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또는 기타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이 있다.

외국 유럽 국가들은 생필품, 문화생활 등과 함께 숙박, 휴양 등 관광활동에 대해서도 국민복지 증진차원에서 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르웨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숙박요금을 면세하고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지 유원시설의 이용료와 입장료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이용 관광객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 전 국민의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국가별로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의 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인 활동, 자선사업 등이 있다.

201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20여 가지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시설 이용요금이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줌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관광활성화에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원시설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전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에 대한 전문가들 중 제주발전연구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제주관광협회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관광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41>과 같다.

<표 41> 유원시설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전환 설문지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약간 도움이 됨	입장요금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업계	약간 도움이 됨	관광활동 관련 지출비용을 경감시켜 관광객의 관광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공기업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연구원	별로 도움 안 됨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내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 수용력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앞의 3번과 유사)

1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관광지나 관광호텔 내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특례 조항을 두어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동일한 8/108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1) 관광업 음식용역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배경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정액을 매입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조업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 사업은 제외되어 있다. 관광사업도 부가가치세법 제6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제도는 원재료로 사용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세를 가상으로 계산하여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음식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급식 등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식품제조업에 대해서도 음식점과 동일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농수산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가공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다. 관광지나 호텔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음식점 업에 등록되어 있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적용이 된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이 음식점업의 8/108보다 낮은 호텔업은 2/102를 적용을 받고 있다. 의제매입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농수산물 매입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부당 공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한도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표42> 와 같다.

<표 42> 부가가치세법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 음식점업	음식업 - 개인사업자 : 8/100 - 법인사업자 : 6/106
	과세유흥장소 : 4/104
2.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사용된다면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관광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각종 관광선물용 식품의 제조 등)이나 음식점(관광지 내 법인사업자 및 관광호텔 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음식점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거나 보통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뿐 그냥 그렇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대부분의 의견이 개정 후 시행 할 경우 별로 큰 실익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관광업 음식용역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별로 도움 안 됨	제주도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업계	보통	의견 없음
공기업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연구원	별로 도움 안 됨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자체가 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의제)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액 자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12) 현행 카지노의 입장료와 영업실적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개별소비세 절차 간소화 및 감면효과로 이용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활성화 하여야 한다.

(1) 카지노 개별소비세 통합 부과방식 개선 배경

카지노 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특정인들만이 운용할 수 있는 영업이기 때문에 특정사업자에 한하여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사행사업에 대한 외부불경제 등을 감안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외국의 여러 국가들도 일반적인 상황이다. 개별소비세 부과 시 현재 카지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카지노 입장요금과 연간 총매출액에 대해 두 번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제도는 카지노의 입장과 영업에 개별소비세를 각각 부과해야 할 정도로 두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한번 입장을 하면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영업행위와 하나로 일치되기 때문에 통합 되어야 한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방식이 카지노 입장료와 카지노 매출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카지노 매출액이 입장고객의 수와도 비례할 수도 있지만 이 보다 카지노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 입장에 대한 과세와 소비자에게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과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입장객 수와 매출액이 서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사업자에게 과세하고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입장객에게 부담금으로 부담시키는 현행 과세방식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모피, 보석,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및 소매업 등의 과세물품은 구매 시 한번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시 그리고 총 매출액에 대하여 두 번 과세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개별소비세와 카지노 사업자에게 입장객의 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입장수입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중과세 논란의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입장객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전액감면 하여 개별소비세 감면효과와 이용객 증가를 유도하여 관광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2) 카지노 개별소비세 통합 부과방식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이중과세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에는 매출액에 대비하는 개별소비세만 과세되고 있다.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다. 카지노사업의 제한적 육성을 기대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개정에 대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별소비세의 통합과세에 따른 감면 혜택이 이용객 확대에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개별소비세의 통합과세 개정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44>과 같다.

<표 44> 카지노 개별소비세 통합 부과방식 개선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별로 도움 안 됨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매출액 대비 개별소비세만 과세되고 있으므로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큰 실익은 없음
업계	약간 도움이 됨	개별소비세 감면은 이용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5년까지 면제되었으나 2016~2017년에는 75%가 감면됨, 이를 지속적으로 면제하여 골프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기업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연구원	별로 도움 안 됨	카지노 사업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특별한 허가 및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대적 급부라고 볼 수 있고, 카지노 사업의 제한적 육성을 기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임

13)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한 특정 과세장소 입장료의 일부 감면으로 현재 1인당 3천원씩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회원제 골프장은 일부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여 관광활성화 기여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골프장 입장료 전액 감면 확대 배경

현재 특정한 과세장소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경마장, 투전기장, 회원제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및 경정장, 유흥주점, 외국인 유흥주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준을 보면 경

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과 2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투전기장, 회원제 골프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 1만2천원,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세율이 투전기장, 카지노와 유사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사행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과세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부과할 때에는 과세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일부감면이 아닌 전액감면이 되어야 한다.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8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 관광중심 기업도시에 설치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기한의 경과로 현재는 1인 입장 시 3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객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62조에 의거 골프장 이용 시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인당 3천원씩 2016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징수를 면제하거나 전액감면으로 골프장 이용고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골프장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그 성격에 맞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감면기한을 3년간 더 연장하여 골프장 이용 고객의 증가를 계속 유도하여 관광활성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향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대중 체육시설로 인식이 되어야 하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조차도 제외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골프산업이 제주지역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대중적 레저로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일부 비회원 이용을 허용하는 골프장과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 일괄 적용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절대 필요하며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체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전문가들도 모두가 절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45>과 같다.

<표 45> 골프장 입장료 전액 감면 확대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절대 필요함	정부의 방침(2018년 일몰계획)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업계	절대 필요함	현재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경륜장 및 유흥주점에 부과되고 있으나 골프장을 사치성, 투기성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골프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또한 2016년 브라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현실에서 골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공기업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연구원	절대 필요함	골프산업이 제주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대중적 레저로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다만 회원제골프장 중에서 일부 비회원 이용을 허용하는 골프장과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일괄적용은 부당하다고 보임

14) 제주도내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매출액의 미달로 인한 수혜에 대하여 현행 제주도 관광발전기금의 징수비율 10%를 15%로 상향 조정하여 제주관광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도 관광발전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배경

제주도내 카지노에 대하여 특정 과세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규정인 연간 총매출액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실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카지노는 극소수로 제주지역 카지노의 대부분이 특별소비세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금의 징수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제주지역 경제 및 관광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표46> 와 같다.

<표 46>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호별	연간총매출액	세 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
3	1천억원 초과	10억+1천억 초과금액의 100분의4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납부)에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내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많은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며 이에 따른 매출액도 급성장 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지노의 기금 납부의 징수율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징수율의 인상 없이 계속 시행되어 왔다. 그동안 관광진흥정책 지원의 수혜로 많은 매출신장이 되었음에도 징수액은 신장률에 비하면 다소 미흡하여 매출액의 20%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되어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적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향조정 시 효과가 보통이라는 의견과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인상하는 것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매출액의 누락 감독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효과는 보통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카지노가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광활성화정책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사업체임을 감안 한다면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상향 조정은 타당하고 절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의견제시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47>과 같다.

<표 47>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설문지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보통	누락되는 매출액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가 오히려 필요함
업계	약간 도움이 됨	적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상이 필요함
공기업	보통	관광진흥 부과는 찬성하나 15-20%의 기금부과인상은 반대함. 업계 반발과 현재 침체되어 있는 카지노업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에 인상률의 적정기준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절대 필요함	카지노 사업이 특별한 허가 및 독점적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감안한다면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징수비율의 상향조정이 타당하고 필요한 것임.

15) 유원시설의 최첨단 장비들 중 국내 제작이 불가하여 전적으로 외국에서 제작한 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고가의 장비수입 시 관세경감 적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유원시설 장비수입 관세 경감 배경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한 국제적 행사와 관련된 수입물품에 한해서도 2017년12월 유원시설의 유희기구는 최첨단장비들로서 국내의 기술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관세경감이 적용되지 않아 한 개의 유희시설을 도입할 경우에도 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장비를 수입 할 경우 관세 경감 항목을 정해 65%~85%까지 관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관세경감 대상이 되는 항목에 관광업과 관련된 유원시설 관련 기자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원시설 등의 장비수입 시 관세경감 조문을 신설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한 국제적 행사와 관련된 수입물품에 한해서도 2017년12월 31일까지 일정기간에 한해서만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행사가 종료되면 관세감면도 같이 종료되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만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제작이 어려운 해외수입 유원시설 기자재는 관세 감면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의견 중 유원시설에 대한 관세 경감혜택이 업종 운영 사업체에게는 다소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 모두는 도움이 정도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48>과 같다.

<표 48> 유원시설 장비수입 관세 경감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업계	보통	의견 없음
공기업	보통	의견 없음
연구원	보통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활용으로 상당 부분 효과를 이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

16)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의거 취득세와 재산세를 산업단지 조성 취득 부동산과 동일하게 감면률을 적용하고 감면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야 한다.

(1)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제도 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정을 보면 조례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취득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한 100분의 25 감면율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관광단지 조성지역 내 토지 매입 시 취득세 100분의25 감면으로 산업단지 감면율 100분의35보다 적게 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산업단지 내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35 (수도권 외 지역은 60/10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조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보다 취득세 감면율

(25%)이 낮고 재산세 경감대상인 부동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당초에는 산업단지 수준으로 취득세·등록세 면제 되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관광단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만 경감하도록 개정이 되었고 그 후 2015년 12월 29일 법 개정으로 다시 감면 비율이 축소되어 현재는 관광단지 취득 부동산은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2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광단지를 산업단지와 다르게 적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관광산업의 발전가능성과 산업 성장세를 고려할 때 동일한 35%로 지방세 감면적용의 확대가 관광활성화에 긍정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기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야 한다.

(2)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으로는 제한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관광산업 관련 부동산이 투자보다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의견과는 달리 지방세 감면은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차를 보였다. 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49>과 같다.

<표 49>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별로 도움 안 됨	제주도내 관광단지 개발 산업은 적정 이익을 숙박시설 콘도 등에서 우선 흡수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제라는 제한적 운영이 필요함
업계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공기업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연구원	별로 도움 안 됨	관광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이 투자 보다는 투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짐. 즉,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질 가능성이 큼

17) 제주특별자치도내 숙박요금에 관광진흥기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

(1) 숙박요금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관광 활성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관광세 명목의 관광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여 국제관광산업 활성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업체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광세를‘숙박세’명칭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도시에서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숙박세의 징수제도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숙박세를 대표적인 관광세로 징수하고 있다. 숙박세의 부담액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숙박비의 약 5%~11% 수준 또는 1인당 약 1천원부터 1천 5백원 수준으로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국가마다 현실에 맞게 다양한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형식으로 징수를 시행한 결과 징수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고 징수절차가 편리하고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은 2014년 1월부터 5%의 숙박세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스페인은 2012년 11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여 평균 1유로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징수에 대한 저항은 전혀 없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관광세 가운데 47개 주에서 각 주별 주세로 가장 널리 채택을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호텔 숙박세(hotel room tax)라는 종가세의 개념으로 숙박요금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다. 기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체류세와 같은 형태의 특별관광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징수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고 징수 절차가 편리하고 좋은 장점이 있는 숙박세를 추가 신설하여 숙박요금의 10%상당 금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제주도의 경우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일부는 관광 수용태세의 개선과 미래 관광객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 50>과 같다.

<표 50> 숙박요금 관광진흥기금 부과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별로 도움 안 됨	숙박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업계	별로 도움 안 됨	제주지역은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많은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전에 시행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폐지되며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업체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
공기업	절대 필요함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페수 등의 처리 비용도 증가되어 제주도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기에 관광객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비용을 부가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미래의 관광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연구원	약간 도움이 됨	제시한 바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숙박세 징수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로 제주도의 경우도 도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다만 징수비율에 대해서는 업종별, 대상별 차등화를 통해 관광객 및 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도 동시에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18)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재 해외로 출국 시 징수하는 출국세인 관광진흥기금을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1) 제주도 해외출국 관광객 대상 관광진흥기금 부과 배경

제주도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하여 관광 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출국세 형태의 관광진흥기금이 현행 1인당 1만원 (선박이용 시는 1천원)으로 2008년도 당해 법규 신설 당시 규정된 금액을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국제관광 활성화에 따른 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관광 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출국세의 기금 징수는 아직까지도 과거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징수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므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1인당 1만5천원 (선박이용 시 1인당 1천5백원)으로 인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 모두는 약간 도움이 될 뿐 징수액 인상으로 커다란 도움은 되지 않는 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51>과 같다.

<표 51> 제주도 해외출국 관광객 관광진흥기금 부과 설문지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업계	약간 도움이 됨	2008년 시설되었던 기준과 현재 실정을 고려하여 인상은 필요함.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임
공기업	약간 도움이 됨	의견 없음
연구원	약간 도움이 됨	2016년을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출국세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9)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의 징수를 위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의 부과 대상에 면세점을 추가 신설하여 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주도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배경

현행 제주도내 면세점은 관광활성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매출액이 급신장하면서 영업의 수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을 아직까지도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인어서 카지노나 해외출국 여행객 등과 같이 기금을 부담시키는 대상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 국제관광 활성화 정책과 각종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관광진흥기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제주도내 면세점에 대하여 형평성과 수혜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지역개발과 공익을 위하여 환원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법을 개정하여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제주도내 면세점이 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기금 재원의 부족분은 사실상 관광진흥 및 활성화 정책에 특혜를 받고 있는 면세점들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환원으로 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면세점에 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기금 부과대상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해당 법률의 조항 개정을 통하여 부과대상에 포함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 제주도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으로는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의 징수는 절대 필요하다며 강력한 징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52>과 같다.

<표 52> 제주도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설문 의견 요약

구분	설문 결과	구체적 의견
행정	절대 필요함	의견 없음
업계	약간 도움이 됨	관광객을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제주도내 영세사업체에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도 필요하며 영세사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공기업	절대 필요함	면세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와 관련하여 몇차례 법 제정 추진이 있었으나 무산되었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주도 내에서 만이라도 기금부과가 필요함. 제주 방문 관광객에 의해 수익이 나는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된다고 생각 됨. (김우남 의원이 제주 부과 발의한 기록 있음)
연구원	절대 필요함	면세점 사업이 특별한 허가 및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았고, 제주지역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업체임을 감안한다면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는 타당하고 필요할 것임

20)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

<표 53> 제주도 관광산업 조세제도 개선 건의사항 내용

구분	건의 내용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은 요즘 해당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에 공정관광 차원에서 연구자가 제안하는 많은 내용이 공감에 감.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1차 산업 비중이 17%를 넘기 때문에 1차 산업 농축수산물과 관광산업이 연계되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감면방안이 필요함 ○ 지역의 물류비가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류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5%로 낮출 필요가 있음
업계	의견 없음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세 신설과 면세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는 무엇보다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제주도내 여행업계의 수수료(송객수수료)에 대한 과세 확대도 검토가 필요함 (외국인 면세점에서 과도한 송객수수료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 ○ 2천만 명의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면서 입도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공항이용료와 함께 부과) 제주 방문 관광객의 증가는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주기에 오페수 증가, 환경 훼손 등의 정비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하여 입도세가 도입된다면 숙박세 등의 부과는 중복되기에 재검토가 필요함
연구원	의견 없음

2. 분석결과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분야 조세제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대답한 설문내용과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한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광분야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개선 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개선 방안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광업종 추가 (2) 근로자 국내 휴가지원 경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3)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확대 (4)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 방안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절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2) 개선 시 제주관광 활성화에 약간 도움이 되거나 보통일 것이라는 의견 제시 내용

(1)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규정에 관광업종 추가 (2)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 기업의 손비로 인정 (3) 관광활동관련 기업의 접대비 지출금액 인정범위 확대 (4)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 규정요건 완화 (5) 의료 관광업종 종사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6)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요금 영세율적용 일몰기한 추가 연장 및 사전환급제도 전환 (7) 관광업종 유원시설 요금과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8) 제주도내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율을 10%에서 15%로 상향 (9)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조정 및 감면기한 3년 연장 10) 제주도내 숙박요금에 관광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 (11) 제주도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국제관광객에게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의 징수금액 인상 등이 있다.

3) 개선 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방안

(1) 농어촌주택 관광휴양형 주거시설로 사용 시 과세특례적용 (2) 관광업종의 음식제공 용역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로 인상 (3) 카지노 입장료와 영업실적에 부과되는 개별소득세의 통합 (4) 유원시설 최첨단 장비 수입 시 관세 경감 등이 있다.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관광산업은 기타 산업에 비해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조세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더욱이 경제 집중 성장시대에 고착된 제조업 위주의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편중지원 정책으로 인해 관광분야에 대한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관광산업 분야는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써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계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지원방안으로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를 적용, 관광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등 기존의 조세지원 제도가 단기적인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 자료들은 있지만 관광업에 대한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다. 최근 3-4년 동안 국내외 관광환경은 큰 변화를 하고 있는데 반해 조세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도특별법)을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관광3법을 이양 받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위임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자치권이라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질적인 제주도의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분야 조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은 관광 관련 분야의 업계종사자, 공무원, 교수 및 연구원들로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청,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의 절차는 첫 번째로 연구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및 관광레저 분야 조세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의견수렴 방법은 좌담회 형태의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과 그 외 개별적인 설문 및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일몰된 시한을 다시 재지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업, 관광공연장업 등과 같이 비록 규모가 다소 적은 관광업종일지라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관광관련 업종이 추가로 포함되어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하거나 전액 감면으로 제주도 골프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골프장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면세점 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를 하여 해당 산업인 관광산업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외 건의사항으로는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의 직·간접적인 효과로 관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주된 지역산업으로 제주도 전체의 조수입원에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소비되어지는 1차 산업의 생산물이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상품보다 자체 상품의 소비도 함께 증가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제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에 대한 현행 조세제도 중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 조세의 감면이나 면제로 국가 조세수입의 일부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 관광분야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효과가 있고 감면세액 영향으로 관광객이 증가됨으로서 관광관련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관광산업과 연관되는 많은 업종의 매출 신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타 세목의 조세수입 증가가 조세감면이나 면제로 감소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긍정적인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시사점

관광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라 생각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2016년도 대통령 국회연설에서도 소상히 밝힌바가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언급을 하며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관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우리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OECD자료에 따르면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나라는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⁴¹⁾

41) 박대통령 국회연설 서울파이낸스 경제일반 2016.02.16.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45>)

특히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천혜의 자원을 가진 관광지로서 제주도 전체가 관광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의 지원과 협조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관광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모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분야

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개정하여 영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이전에 시행했던 사후환급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사전환급제도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일몰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이 2015년 3월 31일로 일몰되었으나 재방문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일몰된 시한을 다시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좀 더 저렴한 숙박용역 제공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비용 절감을 통한 좋은 여건을 제공하여 제주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함이다.

② 법인세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외국자본의 유입 및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관련 업종 중 현재 포함되지 않은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등 업종을 추가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등재된 사업자의 법인세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관광업종에는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공연장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만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업, 관광공연장업 등과 같이 비록 규모가 다소 적은 관광업종일지라도 함께 반드시 추가

하여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 모두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세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관광관련 업종이 추가되어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 분야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특정 과세장소 입장료 과세 시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료의 일부 감면으로 현재 1인당 3천원씩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회원제 골프장은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여 관광활성화 기여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62조에 의한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인당 3천원씩 2016년 1월1일부터 징수를 하고 있다. 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하거나 전액 감면으로 제주도 골프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골프장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료 면제는 단순한 금액적인 조세부분의 혜택으로 생각하기 보다 국내 관광지의 관광객 우대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골프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감면금액 이상의 큰 심리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관광진흥기금 분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카지노와 같이 도내 면세점 매출에 대한 일정률의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주도내 면세점은 외국인 쇼핑관광 매출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쇼핑관광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면세점들은 제주도의 각종 관광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체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력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관광을 위해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 징수를 위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기금 징수를 위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기금법 조항을 신설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면세점은 국가로부터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면제라는 특권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면세 수혜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공익목적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일부는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면세점의 매출액 증가로 얻은 이익 증가분은 면세점이 받은 특혜 이

상으로 공공부분에 재투자가 되어 공익 목적의 재원에 활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사용처와 지원할 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확충에 있어서 관광진흥기금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기금 징수는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이후 관련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더욱 발전된 연구가 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로 도출된 관광진흥발전기금 재원확보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④-1 :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수수료율 인하 방안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기금법에 의한 징수권과 관리권의 주체가 2007년 1월 1일 제주도로 이양된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해외 출국납부금은 한국공항공사에 5.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이 날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국납부금의 징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행정력과 비용의 추가 발생이 전혀 없다.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의 과다한 현행 위탁수수료율을 2%로 낮춰 합리적인 적용률 조정이 이루어져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2 : 숙박세 신설 방안

관광진흥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세 형태의 숙박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관광진흥기금 징수를 들 수 있다. 이는 제주도내 관광숙박업소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관광진흥기금의 용자와 지원 그리고 각종 영세율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여 왔으나 숙박업계의 영세성과 관광객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논의조차 하지 않았었다. 이제는 관광객 급증과 그에 따른 많은 성장과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금 확충의 재원으로 지정을 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숙박세는 세계

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요금에 부가하여 관광세로 징수를 하고 있다.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세의 하나이다.

일본의 숙박세는 2002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1인당 1박요금이 1만엔 미만인 경우는 면제, 1만엔~1만5천엔의 경우 1인당 1박에 100엔(약 1,500원), 15,0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1박에 200엔(약3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미국의 숙박세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며 10~11% 수준으로 하와이는 7.25%를 징수한다. 이탈리아는 1~3성급은 최대 10박까지 1박당 2유로(1인기준 약 3천원), 4~5성급은 1박당 3유로(약4천원)을 징수한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1인당 최고 7프랑(약 1천원)을 징수하고 있다.⁴²⁾

④-3 : 출국납부금 인상 방안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미 출국세를 신설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2011년 1월부터 독일 출발 승객에게 8유로에서부터 최고 45유로까지 징수를 하며, 오스트리아는 2011년부터 오스트리아 공항 출발 승객들에게 8유로에서 최고 35유로 까지 부과 징수를 하고, 아일랜드는 2009년부터 아일랜드 공항 출발 승객들에게 2유로에서 최고 10유로 까지를, 호주는 호주 출국 내외국인 대상 출국납부금 성격으로 Passenger Movement Charge(승객이동세)를 부과하며, 영국은 1994년에 도입하여 항공권 발권 시 특별목적세로 Air Passenger Duty를 징수하고 있다.⁴³⁾

그러나 2007년 1월 1일 중앙정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현재 징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은 출국세 형태로 현재 제주도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에게 1인당 항공이용 시 1만원, 선박이용 시 1천원씩 부과되고 있으나 징수하기 시작한 이래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었다. 이를 1만5천원과 1천5백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출국납부금 인상액의 경제적 효과는 비록 미미할지라도 출국자에게 미칠 수 있는 납부금 부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다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효과로 국외여행이 국내여행으로 전환되어 진다면 그 결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2) 윤주 (2012),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p122

43) 김희수 (2014), 관광부분 적용 조세제도 분석, 한국관광문화연구원. p108

④-4 :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객운송업체의 수혜 이익에 대한 기금납부 방안

급증하는 제주도 입도 관광객으로 인한 항공사와 여객선사의 수입 증가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가장 우선적인 수혜자의 입장이므로 항공료와 여객선 운임 수익에 대한 일부를 제주도 관광관진흥기금으로 징수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을 통하여 기금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광분야 조세제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까지 타 연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더욱이 특별시와 직할시, 특별자치도 등에 관한 자체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가 선도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선행연구와 차이점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특정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분야에 대한 조세제도의 유효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관광분야의 조세제도나 관광호텔과 같은 특정 업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측면만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조세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관련된 모든 조세제도에 관한 유효성과 조세의 지원제도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조세지원과 지역 관광활성화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연구는 국내 관광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한 특정 업종 특히 관광호텔이나 의료관광 분야에 국한된 연구가 진행되어졌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특정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관광분야 조세제도 연구에 초점을 맞춘 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한 점이 타 연구와 구분된 부분이라 하겠다.

4. 연구의 한계

이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 부족으로 인한 자료수집의 한계이다.

기존 관광관련 조세분야에 대한 연구는 관광관련 다른 분야에 비교하여 볼 때 왕성하게 연구되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관련 조세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더더욱 미흡하여 풍부한 연구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표본선정과 자료수집의 한계이다.

제주관광 관련 전문가 선정에서 협회, 공사, 연구원, 도청으로 국한하여 진행하였기에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이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를 대표한 내용이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을 보면 전문가와의 집단 회의, 개별인터뷰, 전화통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 횟수를 늘려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향후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유용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이 경제적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논문

- 김수정·김우곤, 「호텔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관광학 연구25(2), 통권35), 2001
- 오준석,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조세학술 논문집, 제28집 제1호. 2012
- 윤동환,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지원제도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8
- 윤석진, 「관광의 지방재정 확충효과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양섭, 「관광 서비스산업 조세 지원방향」, 2001년 관광학술 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발표회 논문집, 2001
- 이영희 ·주만수 ·최병호 ·홍서빈,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권 26호, 2012
- 이흥근, 「관광호텔의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임성균, 「현행 조세지원 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II. 국내문헌 - 단행본 및 통계보고서

- 강경태, 「세법개론」 서울 : 지혜의 샘, 2011
- 김두형, 「로스쿨2011조세법 기초이론」 경기 과주 : 한국학술정보(주), 2011
- 김희수, 관광부분 적용 조세제도 분석, 서울 : 라인피아(주),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4

- 나성린,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노현섭, 「조세 총칙법 강의」 대구 : 도서출판 대명, 2009
- 서영진, 『조세개론』 서울 : 법문사, 1996
- 서희열, 「세무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학사, 2005
- 원윤희, 역사속의 세금이야기, 서울 : 박영사, 2014
- 유은종, 「세법학 I」, 서울 : 도서출판 탐진, 2011
- 윤주, 「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2012
- 윤현석,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방안」, 지방재정세계 유관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4
- 임승순, 「조세법」 서울 : 박영사, 2011
- 제주관광협회
- 최기종, 「관광학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2014
- 최명근, 「稅法學總論(增補6版)」, 세경사, 1992
-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 서울 : 광고 이텍스, 201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서울 : 휴먼컬처아리랑, 2016
- 한국은행 편집부, 2013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14

III. 국내외 웹사이트

박대통령 국회연설, 서울파이낸스 경제일반 2016.02.16.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

조세일보, www.joseilbo.com/news/htmls/2013/03/20130318175180.html

연합뉴스,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0/26/>

관광분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濟州特別自治道 觀光分野 租稅制度 改善에 關한 研究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광관련 전문가의
현실성 있는 고견을 취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본 설문문의 응답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이 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울러 본 연구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조사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 이 태 철
소속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전화 : 010-6247-7200
메일 : leeteakr@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1. 법인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구 분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p>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에 업종 추가</p> <p>[현행] <u>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u>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u>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u>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u>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u>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u>종합유원시설업</u>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u>국제회의시설</u> 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u>휴양콘도미니엄업</u>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u>청소년수련시설</u></p> <p>[개선방안] (추가) <u>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u>에 외국자본의 유입 및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관련 업종 중 <u>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u> 등은 외국인투자법인세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하여야 한다.</p>	①	②	③	④	⑤
<p>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광업종 추가</p> <p>[현행] <u>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u>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p>	①	②	③	④	⑤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개선방안]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서는 2014년11월 개정 시에 관광객이용시설업 등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하였으나 관광관련 업종인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제외되어 있어 감면업종에 추가 포함하여야 한다.

3.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를 법인의 손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 3. 인건비

[개선방안]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인정 항목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에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를 손비인정 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

4. 관광활동 관련 기업 접대비 지출금액 인정범위 추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6.02.05.] 일부개정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 2016.2.5>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개선방안] (추가)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관광활동 관련 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의 개정을 통하여 특히 제주도내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 적용에 대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접대비와 관련되어 지출한 모든 접대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문화접대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규정 완화하여 관광 관련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 요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개선방안] (개정)

소기업 규모를 기준 하는 해당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제조업은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 건설업이나 운수업, 도.소매업은 8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광업종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은 30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이를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관광관련 사업체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완화하여야 한다.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2. 소득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구 분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6. 기업체 근로자의 휴가지원 경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선방안] (신설)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비과세 소득에“근로자의 국내 여행 휴가지원 경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7. 농어촌 주택을 관광휴향형 주거시설로 사용 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 과세특례 적용

[현행]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개선방안] (신설)

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제안들이 적극 반영되고 있으나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관광 시 숙박시설 부족과 관광객들의 현지 민박 선호 경향에 충족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관광형 주거시설(민박 시설)로 사용 할 경우 관광형 휴양시설로 분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시켜야 한다.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8.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우수한 국제의료관광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료 관련 기술자의 소득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p>[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①	②	③	④	⑤
<p>[개선방안] (신설) 정부에서는 외국인 기술자를 영입하여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국제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많은 외국인 의료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료 관련 기술자들은 아직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제의료관광과 관련되는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고도의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이 확대 적용 되어야 한다.</p>					

3.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구 분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9. 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①	②	③	④	⑤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 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현행 사후환급제도를 사전환급제도로 전환 하여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③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방안] (개정 및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지불한 숙박요금에 대하여 사후적 환급을 하고 있으나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움 때문에 실효성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사후환급제도를 사전환급제도로 전환하여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급대상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의거 2015년 3월로 일몰시한이 경과된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3년간 더 연장을 하여 외국인의 한국방문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외국인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관광업종의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이용 요금 및 입장료 등 관광활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개선방안] (개정)

관광업종 중 유원시설로 등록된 업종에 대한 시설물 이용 요금 및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관광활동과 관련된 지출로 많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관광객의 관광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내여행 활동을 촉진 하며 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여야 한다.

1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관광업을 지원하는 차원의 정책으로 관광업종의 음식제공 용역 즉, 관광지나 관광호텔 내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특례 조항을 두어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동일한 8/108을 적용 해주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제65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1.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 : 104분의 4
2. 제1호 외의 자: 108분의 8

[개선방안] (개정)

관광업종 중 관광객에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하여 음식점업으로 별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농수축산물의 매입과 관련된 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관광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업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업종별 적용율을 개정하여 부수적인 제공일지라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2/102를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108분의8)을 적용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4. 개별소비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구 분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p>12. 현행 카지노의 입장요금과 영업실적에 각각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 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감면효과와 이용객 증가 유도로 활성화를 해야 한다.</p> <p>[현행] <u>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u>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遊興飲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 한다. ③ <u>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u> <개정 2015.12.15> 1.</p>	①	②	③	④	⑤

5. 카지노 : 1명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개선방안] (신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카지노 입장객에게 입장 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여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감면하거나 면세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제주도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1회 과세로 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모피, 보석, 자동차와 같은 물품은 구매 시 한번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이와 동일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3.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한 특정 과세장소 입장료의 일부감면으로 현재 1인당 3천원씩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회원제 골프장은 일부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여 관광활성화 기여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중심 기업도시 내**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 1호 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 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7, 2013.1.1., 2015.6.22>

[개선방안] (신설)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할 경우 골프 관광객의 심리적 할인효과가 매우커서 해외로 나가는 많은 골프여행객을 유치할 수가 있으며 골프 관광객의 유치로 인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개별소비세법 일몰시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을 연장하거나 새로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4. 제주도내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매출액의 미달로 인한 수혜에 대하여 현행 제주도 관광발전기금의 징수비율 10%를 15%로 상향 조정하여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5.>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호별	연간총매출액	세 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
3	1천억원 초과	10억+1천억 초과금액의 100분의4

관광진흥법 제30조 **【기금의 납부】** ①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선방안] (개정)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 등】** 개정을 통하여 제주도내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현행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있으나 도내 거의 대부분의 카지노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간 총매출액의 미달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 산출액의 기준이 되는 자진 신고하는 매출액에 대한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과소 납부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 미달로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담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을 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5. 관세분야 조세제도 개선

구 분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p>15. 유원시설의 국내 제작이 불가능 고가의 최첨단 기구 및 장비를 외국에서 제작 수입 시 관세경감 적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p> <p>[개선방안]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에 관광업종의 유원시설업에 사용되는 최첨단 기구 장비로 국내에서 제작이 불가능한 장비 및 기구의 수입 시 관세를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초기 개업 시 고가장비 수입에 따른 운영자금의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을 활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당 관광업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①	②	③	④	⑤

6. 취득세와 재산세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분야

구 분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p>16. 현행 산업단지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35/100를 경감하고 있으나 관광단지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이 25/100으로 낮아 산업단지 감면율과 동일하게 개정을 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p> <p>[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u></p>	①	②	③	④	⑤

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31.>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선방안]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35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내 숙박요금에 대한 관광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현행]

현재 제주도는 매년 밀려드는 해외 여행객과 국내 여행객들이 급증하므로 인해 각종 자연훼손과 질서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확립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시급한 관광활성화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하여 당장 필요한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개선방안] (신설)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많은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제주도로서는 징수나 부과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고 편리성이 좋은 방법을 우선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주도내 관광호텔의 숙박요금에 대하여 관광세 명목의 숙박세를 신설하여 징수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숙박세 신설 징수는 제주도의 관광이 활성화 될수록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숙박업 사업자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징수를 하되 모든 관광숙박업소를 전부 징수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는 숙박업소를 징수대상으로 하여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숙박요금에 일정을 또는 일정액을 정하여 비용을 부담 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숙박세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여러 국가들로부터 대표적인 관광세로 징수가 되고 있으며, 숙박세의 부담액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숙박비의 약 5%~11% 수준, 또는 1인당 약 1천원부터 1천5백원 수준으로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국가마다 현실에 맞게 다양한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형식으로 징수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징수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고 징수가 편리하고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숙박요금의 10% 상당 금액을 숙박세로 신설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8. 제주도에서 해외로 출국을 하는 국제관광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징수하는 출국세의 관광진흥기금을 개정하여 상향 조정 하여야 한다.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현행]

현재 제주도에서 해외로 출국을 하는 국제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출국세의 관광진흥기금 징수금액 설정이 과거 2008년도에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상의 요인은 충분하다.

[개선방안] (개정)

제주도에서 징수하는 출국세의 관광진흥기금 부담액의 부담률을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조항의 개정으로 1인당 1만원(선박은 1천원)에서 1인당 1만5천원(선박은 1천5백원)으로 상향 조정 하여야 한다.

19. 제주도내 면세점의 매출액에 대하여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조항 신설로 일정률의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절대 필요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절대 필요 없음
①	②	③	④	⑤

[현행]

현재 제주도내 면세점은 매년 매출액이 신장하여 연간 1조원을 넘으면서 가장 큰 관광객 증가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매출액에 비례하는 제주도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기금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어 카지노나 출국세와 같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 등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 (신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부족분은 사실상 관광진흥 및 활성화 정책에 특혜를 받고 있는 사업인 관광객 상대 면세점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점하다시피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환원이 부족하며 다른 기금 부과대상 업종과의 부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는 해당 법률인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징수조항 신설을 통하여 부과대상에 포함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7.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

Blank area for submitting suggestions.

수고하셨습니다 !

○ 참석자 : 소속명 ()

Abstract

Touris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Jeju and its contribution to Jeju economy also is very high. Jeju government needs the long term tax support program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ourism industry rather than the short term tax support program.

The study aims to evaluate current Jeju tax system of tourism sector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Specialist groups such as professors, officers of tax department, travel and tourism employees, and researchers responded to the survey for this study.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was to review current tax system of tourism and leisure in Jeju. Next step was to collect extensive opinions from specialist groups. FGI(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Zero percent rate of Value Added Tax on hotels for foreigners in Jeju should be renewed. Secondly, small and medium-sized tourism enterprises should have tax credits. Third,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 consumption tax on admission fee of golf courses in Jeju should be achieved by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reform. Forth, duty free shops in Jeju should rais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depending on their sales.

These suggestions of this study might occur a transitory decrease of Jeju's tax revenues. However, these suggestions have positive effects on tourism in Jeju. For example, Jeju's tax revenues will be increased from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consumption tax because of increasing tourists. At the same time, indirect effects of these suggestions such as improving Jeju's tourism image will be expected.

Internal tax, customs duties, individual consumption tax, local tax, and tourism promotion fund in the current tax system related to the tourism industry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strengthen exter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could provide some basic information for improvement of tax systems. Therefore,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eorganize Jeju's tax systems.